

의안번호	제 29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발 의 자 : 연철흙, 전원표, 허창원,
송미애, 이옥규, 정상교,
박상돈

1. 제정 이유

- 충북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
-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1조)
-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-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시·군 및 법인·단체에게 경비보조를 규정함(안 제14조)
-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시·도, 기초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민간협력공동체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라. 입법예고 : 2019. 9. 23. ~ 2019. 10. 3.(10일간)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충청북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민주시민교육"이란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·가치·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,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,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.

제4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.

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내 시·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)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3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)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
2.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
3. 도민의 권리와 의무, 참여와 책임, 의사소통,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조정,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
4. 자유, 자율, 공정, 준법, 배려·나눔,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
5. 양성평등, 도덕·윤리, 국가관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
6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
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2.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·단체의 관계자
4.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국장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,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,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이수증의 발급)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 및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교류협력 등)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·도, 기초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위임할 수 있으며, 필요할 때에는 법인·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